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기제부사관 선발요건 완화 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4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기제부서관 선발조건 완화	3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기능 확대	8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6.
3. 회부연월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

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1. 임기제부서관 선발조건 완화

[신·구조문대비표]

– 3 –

□ 현행법 제20조의2제1항1)에서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방부장관은 현행법 제20조의3제1항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44개의 군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함.

< 군 특성화고 현황 >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 황	44개	31	4	5	9

□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더라도 현행 제도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마쳐야 하므로, 복무 과정에서 임기제부사관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 1)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 2) 「병역법」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군 특성화고 졸업생 임관현황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임관률	68.9%	53.1%	45.4%	47.9%
입대 / 임관	851/586	1,070/569	1,239/562	1,044/500

□ 개정안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경력 단절을 최소화하여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짐.

□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군 특성화고 출신 인력이 병 복무 이후에도 전문성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임기제부사관 제도에 대한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지원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조기 임관을 허용할 경우, 현역병 복무 중 단기복무부사관 지원이 가능한 육군 현역부사관 제도와 지원 대상이 실질적으로 중첩되어 제도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현역부사관 모집 인원이 추가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육군 현역부사관 임관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임관인원(명)	2,330	2,404	2,018	1,338	929

둘째, 현역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4조제1항3)에 따라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단기 임기 선택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으로 부사관 인력의 근속 안정성이 저하되고 숙련 인력의 연속적인 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사관 인력 공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역병 입영 인원이 이미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동일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순환 주기가 더욱 빨라지면서 현역병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역병 입영률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입영률(%)	96.6	86.8	87.5	90.4	89.8

3)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4조(복무기간) ①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은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자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1년 이상 현역병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 임관시키는 것은 현역병 복무 중에 단기복무 부사관(의무복무 4년)을 신청할 수 있는 육군 현역부사관 제도와 대상이 중복되어 현역부사관 모집인원이 감소될 수 있고 더불어 현역병 입영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병의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기능 확대

- 현행은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을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바꾸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하 이 조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이라 한다)을----- ----- -----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 -----.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단기복무 부사관-----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현재 군 특성화고 졸업자가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민간부사관)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 특성화고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기술과 숙련도가 인사·보직 체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군의 기술전문인력 확보 및 운용 측면에서 제도 간 연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에서 군 특성화고를 통해 양성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4)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원조건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어 임기제부사관과 달리 현역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형과정을 거쳐 민간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됨.

□ 개정안과 같이 임기제부사관 양성기관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은 현역병복무 후 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졸업 후 바로 지원을 통해 현역병 복무없이 4년의 복무기간이

4)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있는 민간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등 선택권이 주어지게 됨⁵⁾.

□ 개정안은 군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현재 예외적으로 민간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상황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군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성기능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군 특성화고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기술과 숙련도가 이후 보직 경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화되고 국가적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의 수급 안정성을 높여 병 복무기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적으로도 복무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개인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부합하는 군 복무 경로를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군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역병의 복무를 전제로 하는 임기제부사관에서 민간부사관으로의 선택이 증가하는 경우,

5) 현재도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민간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원, 특기 등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양 성	1,038명	676명	52명	159명	151명
현 황 (민간부사관)	257명	74명	42명	57명	86명
비고(공식)		양성인원 기준 10~15% 허용	희망인원 전원수용	세부 특기 고려 수용	인력운영 고려 수용

현역병 입영 인원이 이미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동일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순환 주기가 더욱 빨라지면서 현역병 인력 부족 현상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역병 입영률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입영률(%)	96.6	86.8	87.5	90.4	89.8

- ☐ 참고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과 같이 군 특성화고를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하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25년 군 특성화고 현황

○ 총괄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 황	44개	31	4	5	9

○ 육군

청색 글씨 (마이스터고), 사립 19개교 / 공립 25개교

구분	금파 공고	동아 마고	경북 항공고	부산 전자 공고	수원 공고	서울 지능고	인천 소방고	서산 공고	서울 로봇고	춘천 기공	한국 항공	대구 일마고	신라 공고	한국기술 부산고	광운 인공 지능고	경남 자고
특기 (학급)	궤도 / 통신	통신 / 궤도	헬기 정비 (2)	통신	통신 (2)	공병 / 통신	총포	공병	통신 (2) 드론 (예비)	궤도	총포	총포 / 통신	자동차 / 자주포	공병	통신	자동차
법인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사립
지역	광주	대전	영주	부산	수원	서울	인천	서산	서울	춘천	태백	대구	경주	진안	서울	진주
진입 년도	'08년 최초시작 '20(경북항공 헬기정비 1학급 추가)								'15년 진입			'16	'20년 신라, 진안 1학급식 추가		'19년 진입	

구분	인덕 과기고	인천 반도체 고교	예산 전자 공고	한양 공고	경기 기계 공고	전남 미래 자동차고	연무 마이 스터고	경북 하이 텍고	대구 공고	안산 공고	영남 공고	조일고	한국 국제 조리고	충남 기공	세경고	
특기 (학급)	자동차 / 공병	통신	통신	자동차 / 자주포 운용	자주포 운용 (2)	기갑 조종	방공	공병 / 통신	수송	통신	기갑 조종	기갑 조종	조리	기갑조종 / 자주포 운용	탄약 관리	
법인	사립	공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사립	
지역	서울	인천	예산	서울	서울	정남진	논산	안동	대구	안산	대구	대구	영주	대전	파주	
진입 년도	'19년 진입 '21년 신라 / '23년 한양 추가				'20년 진입			'21년 진입							'22년 진입	

○ 해군 공군

구분	해 군				공 군				
	성동공고	인천 해양고	남원 제일고	서귀포 산과고	경북 항공고	강호 항공고	상서고	김해 건설공고	경남 자동차고
특기 (학급)	전기	기관	조리	통신	항공 정비(2)	항공정비(2) 항공전자(1)	조리	공병 시설	공병 전기
법인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사립	사립	사립	사립
지역	서울	인천	남원	서귀포	영주	고창	대구	김해	진주
진입 년도	'08년 진입	'19년 진입	'20년 진입		'08년 진입		'20년 진입	'20년 진입	'21년 진입

○ 해병대

구분	부평공고	한국 치즈과학고	경북 기계공고	증평공고	기술 부사관고	신라공고	연무마이 스터고	대전도시 과학고	영천 전자고	※ 각 군 및 해병대, 기술인력육성(군 특성화고) 지원 보조사업자 현황 ○ 육군: 31개교 44개 학급(육항) ○ 해군: 4개교 4개 학급 ○ 공군: 5개교 8개 학급 ○ 해병대: 9개교 12개 학급
특기 (학급)	자주포 조종 / 상륙장갑	조리	통신 / 궤도	공병	통신	통신	총포	기갑 조종 / 수송정비	통신	
법인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사립	
지역	인천	임실	대구	증평	진안	경주	논산	대전	영천	
진입 년도	'20년 진입								'21년 진입	